

人權法(案)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보장하기 위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人權侵害를 防止·救濟하고 人權意識을 擴散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基本方針) ①이 법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實踐함을 基本方針으로 하며, 國家는 이 基本方針을 수행하는 第1次的인 책임을 진다.

1. 人權意識 鼓吹를 위한 教育 및 弘報
2. 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慣行의 改善
3. 人權侵害에 대한 迅速한 調査와 救濟
4. 其他 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필요한 措置

②國民人權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方針의 수행에 관하여 國家의 活動을 監視하고 그 活動이 充分하지 아니할 경우 그 基本方針을 수행하는 책임을 진다.

第3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人權”이라 함은 憲法 및 法律에서 보장하거나 大韓民國이

加入·批准한 國際人權條約 및 國際慣習法에서 인정하는 人間으로서의 自由와 權利를 말한다.

2. “矯正機關等”이라 함은 矯導所, 少年矯導所, 拘置所, 保護監護所, 治療監護所, 少年院, 少年分類審査院을 말한다

3. “搜查機關등 從事者”라 함은 檢察, 警察, 國家情報院, 矯正機關等, 保護觀察所, 出入國管理事務所(外國人保護所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公務員,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 관한法律에서 규정한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하는 者, 軍檢察·憲兵·機務部隊에 소속된 軍人 및 軍務員을 말한다.

4. “多數人保護施設”이라 함은 多數人을 保護·收容하는 시설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시설을 말한다.

5. “拘禁·保護施設”이라 함은 警察署 留置場, 矯正機關等, 外國人保護所, 軍矯導所(軍拘置所 및 憲兵隊의 營倉을 포함한다), 多數人保護施設을 말한다.

6. “中央國家機關의 長”이라 함은 國會議長, 大法院長, 憲法裁判所長, 中央選舉管理委員會 委員長, 憲法 또는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설치된 中央行政機關 또는 合議制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第4條(國家機關등의 義務) ①國家機關 및 그 업무를 委任받은 公·私團體는 第2條第1項의 基本方針에 따라 人權教育 및 弘報,

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慣行의 개선, 人權侵害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法的·制度的 裝置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財源의 調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機關은 法令·政策의 집행과정에서 人權을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條(法務部の 役割) 法務部長官은 第4條의 國家機關의 義務를 履行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人權擁護에 관한 綜合計劃의 樹立 및 施行
2. 人權擁護에 관한 各 部處間의 協力
3. 國民人權委員會에 대한 支援
4.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활동하는 團體 및 個人과의 協力

第6條(外交通商部·教育部·保健福祉部·勞動部·女性特別委員會 등의 役割) ①外交通商部長官은 國際人權條約의 加入, 人權과 관련된 國際機構活動의 參加, 在外國民의 人權侵害의 豫防과 救濟를 통하여 人權의 擁護 및 伸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教育部長官은 各級 學校의 敎育課程에 人權에 관한 敎育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保健福祉部長官은 女性, 障礙人, 高齡者, 兒童 등 社會的 弱者의 福祉增進을 통한 人權伸張에 노력하여야 하며 多數人保護施

設에서 人權侵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④ 勞動部長官은 雇傭의 促進과 勤勞條件의 向上을 통한 勤勞者의 人權伸張에 노력하여야 하며 雇傭分野에서 差別行爲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⑤ 女性特別委員會 委員長은 女性에 대한 差別行爲를 豫防·是正·改善하는 활동을 통하여 女性人權의 擁護와 伸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其他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 業務에 관하여 第2條第1項의 基本方針을 수행하기 위한 方案을 講究하고 이를 實行하여야 한다.

第7條(國民의 義務) 모든 國民은 人權의 意味와 重要性을 인식하고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

第8條(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는 搜查機關등 從事者, 이들로부터 使喚를 받은 자 또는 多數 人保護施設에 소속된 職員이 그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는 행위
2.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행위
3.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押收 또는 搜索하는 행위
4.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郵便物の 檢閱, 電氣通信의 監聽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他人間의 對話秘密을 침해하는 행위
5.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私生活에 관하여 寫眞을 撮影하여 公開하거나 그 秘密을 漏泄하는 행위
6.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 拘禁·保護施設의 收容者나 被保護者를 懲戒 또는 懲罰하는 행위
7. 사람에 대하여 暴行, 脅迫, 拷問 등 苛酷한 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死亡 또는 傷害에 이르게 하는 행위
8. 사람을 侮辱하거나 性的 羞恥心을 誘發하는 행위

第9條(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의 禁止) 搜查機關등 從事者 기타 國家機關 소속 公務員 및 多數人保護施設에 소속된 職員은 第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0條(差別行爲) “人權侵害行爲 중 差別行爲(이하 “差別行爲”라 한다)”는 合理的인 理由없이 性別(出産 또는 妊娠을 포함함), 宗教, 年齡, 障礙, 社會的 身分, 出身學校, 出身地域, 出身國家, 出身民族, 容貌 등 身體的 條件, 婚姻與否, 家族의 狀況, 政治的

見解, 人種 또는 皮膚色에 기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憲法 第11條第1項에 規定한 平等權을 侵害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서 特定한 사람(特定한 사람들의 集團을 포함한다. 以下 같다)에 대한 優待를 差別行爲의 範圍에서 제외한 경우 그 優待는 이 法에서도 差別行爲로 보지 아니한다.

1. 雇傭(募集, 採用, 敎育, 配置, 昇進, 賃金 및 賃金外의 金品 支給, 資金의 融資, 停年, 退職, 解雇 등을 포함한다. 以下 같다)에 있어서 特定한 사람을 優待, 排除, 區別 또는 不利하게 待遇하는 행위
2. 財貨·用役·交通手段·商業施設·土地·住居施設의 供給이나 利用에 있어서 特定한 사람을 優待, 排除, 區別 또는 不利하게 待遇하는 행위
3. 敎育施設이나 職業訓練機關의 利用에 있어서 特定한 사람을 優待, 排除, 區別 또는 不利하게 待遇하는 행위
4. 其他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特定한 사람을 優待, 排除, 區別 또는 不利하게 待遇하는 행위

第11條(人種侮辱) 第10條第1號 乃至 第3號의 規定에 의한 雇傭, 財貨·用役·交通手段·商業施設·土地·住居施設의 供給이나 利用 또는 敎育施設이나 職業訓練機關의 利用에 있어서 人種·

皮膚色·出身國家 또는 出身民族을 이유로 特定한 사람에 대하여 敵對感 또는 憎惡心을 表明하거나 輕蔑 또는 嘲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侮辱感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人種·皮膚色·出身國家 또는 出身民族에 基한 差別行爲로 본다.

第12條(性戲弄) 男女差別禁止 및 救濟 등에 관한 法律 第2條第2號에 規定한 性戲弄은 性別에 基한 差別行爲로 본다.

第13條(差別行爲의 禁止) 누구든지 差別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章 國民人權委員會

第1節 設立 및 業務

第14條(設立) ① 搜查機關 등에 의한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 등을 調査·救濟하고 기타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효과적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國民人權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② 委員會는 特殊法人으로 한다

第15條(地位) ① 委員會는 그 權限에 속하는 業務를 獨立的으로 수행한다.

② 委員會는 人事 등 組織 運營에 필요한 事務를 獨立的으로 수행

한다.

③委員會는 그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6條(事務所) ①委員會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定한다

②委員會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

第17條(定款) ①委員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記載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 및 支部에 관한 사항
4.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5. 豫算 및 會計에 관한 사항
6. 小委員會에 관한 사항
7. 事務處에 관한 사항
8. 人權委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9.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10. 規則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委員會는 在籍 人權委員 3分の2 以上の 贊成으로 定款을 變更할 수 있다.

第18條(登記) ①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登記後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19條(業務) 委員會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人權 敎育 및 弘報
2. 人權에 관한 法令(提案된 法令案을 포함한다) · 制度 · 政策 · 慣行의 研究와 그 改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3.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에 대한 調査와 救濟
4. 國際人權條約에 따른 政府報告書 작성 支援
5. 國際人權條約의 加入 및 履行에 관한 研究와 勸告 또는 意見表明
6. 國家機關이 요청하는 人權에 관한 研究와 諮問
7. 拘禁 · 保護施設에 대한 視察과 그 改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8. 人權狀況에 관한 實態調査
9. 人權侵害의 類型, 判斷基準 및 그 豫防措置 등에 관한 指針의 提示 및 勸告 . .

10. 人權의 擁護와 伸張을 위하여 活動하는 團體 및 個人과의 協力

11. 人權과 관련된 國際機構 및 外國의 人權機構와의 交流·協力

12. 第1號 내지 第11號의 業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業務

第20條(拘禁·保護施設의 視察) ①委員會는 人權實態 파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人權委員으로 하여금 第19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視察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人權委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委員會의 職員 및 專門家を 同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視察하는 人權委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收容者나 被保護者를 面談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視察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視察하는 人權委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21條(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調要請) ①委員會는 第19條의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私團體에 필요한 資料提出 및 事實照會 등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등은 이에 성실히 協助하여야 한다.

第22條(勸告 등의 相對方 및 勸告에 대한 尊重義務) ①委員會는 第19條第2號, 第5號, 第7號, 第9號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을 關係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私團體에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로부터 勸告를 받은 關係 國家機關 등의 長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한 이를 尊重하여야 한다.

第23條(年例報告書 등의 提出) ①委員會는 每年 2月 末까지 委員會의 前年度 活動狀況에 관한 年例報告書를 大統領과 國會에 提出하고 이를 國民에게 公表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大統領과 國會에 特別報告書를 提出할 수 있다

第2節 組織 및 運營

第24條(委員會의 構成)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의 人權委員(以下 “委員”이라 한다)으로 構成하며, 委員長을 포함한 4人의 委員을 常任으로 한다.

②委員長과 委員은 社會的 信望이 높고 人權에 관한 識見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國會議長, 大法院長, 法務部長官으로부터

各 3人을 추천받아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을 任命함에 있어 法曹界, 女性界, 勞動界, 市民團體 등 社會의 各 分野를 代表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중 3人 以上을 女性으로 任命하여야 한다.

⑤國會議長, 大法院長, 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을 추천함에 있어서 女性을 1人 以上 포함하여야 하고, 常任委員 1人을 指定하여야 한다.

⑥任期가 滿了된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은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

第25條(小委員會) ①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常任委員 1人을 포함한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는 小委員會로 하여금 審議·議決하게 할 수 있다.

1. 定款의 變更, 豫算 및 決算, 規則의 制定 및 改廢, 財産의 取得 및 變更 등 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사항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拘禁·保護施設의 視察, 第40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議決, 第43條第1項第1號 但書의 規定에 의한 議決,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등의 公開에 관한 사항

3. 委員會의 종전 議決例를 變更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小委員會에서 議決되지 아니하거나 小委員會가 委員會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5. 기타 委員會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小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사항은
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 것으로 본다.

第26條 (委員長의 職務) ①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한다

②委員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委
員長이 미리 指名한 常任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27條(委員의 任期)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
고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28條 (委員의 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委員
長 및 委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3. 公務員(教育公務員은 제외한다)

4. 政黨의 黨員

5.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選舉에 候補者
로 登錄한 者

②委員長 또는 委員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退職된다

第29條(委員의 身分保障) 委員長 또는 委員은 身體上 또는 精神上의 障礙로 職務遂行이 顯著히 困難하게 되거나 不可能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意思에 反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第30條(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 ①委員會의 議事は 委員長이 主宰하며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小委員會의 議事は 常任委員이 主宰하며 構成委員 全員の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31條(除斥, 忌避, 回避) ①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陳情의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였던 자가 當該 陳情의 當事者(陳情人, 被陳情人 및 被害者가 아닌 者가 제기한 陳情의 被害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이거나 그 當事者와 共同權利者 또는 共同義務者인 경우

2. 委員이 當該 陳情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委員이 當該 陳情에 관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한 경우

4. 委員이 當該 陳情에 관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委員이 當該 陳情에 관한 搜查 또는 裁判에 關여하였던 경우

②當事者는 委員에게 審議·議決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委員長은 이 忌避申請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다만, 委員長이 결정하기에 相當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委員會의 議決로 결정한다.

③委員 本人이 第1項 各號의 1의 事由 또는 第2項의 事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陳情의 審議·議決을 回避할 수 있다.

第32條(事務處의 設置) ①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事務處를 둔다.

②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을 포함한 필요한 職員을 두며 事務總長을 제외한 職員은 委員長이 任命한다.

③事務總長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④事務總長은 委員長의 命을 받아 事務處의 事務를 처리하고 所屬 職員을 指揮·監督한다.

第33條(懲戒委員會의 設置) ①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의 懲戒處分을 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懲戒委員會를 둔다.

②懲戒委員會의 構成, 權限, 審議節次, 懲戒의 種類, 效力 기타 懲戒에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의 規則으로 정한다.

第34條(職員의 身分保障) 委員會의 職員은 刑의 宣告·懲戒處分 또는 委員會의 規則이 定하는 事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意思에 반하여 退職·休職·降任 또는 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第35條(資格詐稱의 禁止 等) ①누구든지 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의 資格을 詐稱하여 委員會의 權限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업무처리 중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6條(類似名稱使用의 禁止) 委員會가 아닌 者는 國民人權委員會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37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①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3條, 第129條 내지 第132條, 第136條, 第137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②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은 國家公務員法 第65條, 第84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38條(代理人의 選任) 委員長은 委員과 職員중에서 委員會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39條(委員會의 組織·運營등) 이 法에 規定된 것 이외에 委員會의 組織·運營 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節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의 調査와 救濟

第40條(委員會의 調査對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행위(이하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라 한다)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

1. 第8條에 規定한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2. 搜查機關등 從事者를 제외한 다른 國家機關 소속 公務員 또는 그의 使喚를 받은 者가 行한 第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위로서 委員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在籍 委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調査하기로 議決한 行위
3. 第10條 내지 第12條에 規定한 差別行爲

第41條(陳情人의 適格)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로 被害를 입은 者나 그러한 行위에 관하여 알고 있는 者는 委員會에 陳情할 수 있다.

第42條(陳情의 方式) ①委員會에 陳情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文書로 陳情하여야 한다. 다만 文書에 의할 수 없는 特別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口述로 陳情할 수 있다.

1. 陳情人의 姓名과 住所
2. 被陳情人의 姓名 기타 被陳情人을 特定할 수 있는 사항
3. 陳情의 趣旨와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

②拘禁·保護施設에 收容 또는 保護되어 있는 者가 委員會에 陳情하고자 하는 때에는 拘禁·保護施設의 公務員 및 職員은

그 陳情書 작성을 許容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公務員과 職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陳情書를 委員會에 지체없이 送付하여야 하며 그 接受證明書를 委員會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陳情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43條(陳情의 却下) ①委員會는 陳情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調査하지 아니하고 却下한다.

1. 當該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經過하여 접수된 경우. 다만,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陳情이 委員會의 調査對象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3. 陳情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明白히 虛偽이거나 理由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匿名으로 陳情을 제기한 경우
5. 被害者가 아닌 者의 陳情에 관하여 被害者가 調査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6. 陳情人이 陳情을 取下한 경우. 다만, 被害者가 아닌 者가 제기한 陳情이 取下되더라도 被害者가 그 陳情取下에 同意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陳情의 趣旨가 當該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에 관한 法院의 確定判決이나 憲法裁判所의 決定에 反하는 경우

8.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과 同一한 事案에 관하여 搜查, 裁判, 行政審判, 國會의 國政監査나 國政調査, 憲法裁判所의 審判이나 憲法訴願, 監査院의 監査, 國民苦衷處理委員會의 苦衷民願 調査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國家機關에서 權利救濟節次가 進行 중인 경우

9. 기타 委員會가 調査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明白히 인정되는 경우

②委員會는 第1項에 의하여 陳情을 却下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陳情을 關係機關에 移送할 수 있다. 이 경우 陳情을 移送받은 機關은 委員會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處理結果를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調査를 개시한 후에도 그 陳情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陳情을 却下한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陳情을 却下한 경우 그 陳情人은 그 却下事由가 消滅한 때에는 委員會에 다시 陳情할 수 있다

第44條(調査의 開始) ①委員會는 陳情을 접수한 때에는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陳情을 却下하지 않는 한 지체없이 그 內容에 관하여 必要한 調査를 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가 있다고 믿을만한 相當한

根據가 있고, 그 내용이 重大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第45條(調査의 目的) ①委員會의 調査는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로 인한 被害救濟를 目的으로 하여야 하며 國家機關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個人의 私生活을 침해하거나 繫屬중인 裁判 또는 搜查중인 事件의 訴追에 부당하게 干渉할 目的으로 調査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6條(調査의 方法) ①委員會는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 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취할 수 있다.

1. 陳情人, 參考人, 被陳情人에 대한 陳述書 提出要求.
2. 陳情人, 參考人, 被陳情人의 出席要求 및 陳述 聽取.
3. 鑑定人의 指定 및 鑑定의 依賴 .
4. 被陳情人 또는 被陳情人의 소속 機關, 團體등에 대하여 關係 資料나 物件의 提出要求 또는 제출된 資料나 物件의 領置

②委員會는 調査를 위하여 필요하다 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 委員이나 職員으로 하여금 陳情의 原因이 된 事實이 발생한 場所, 기타 필요한 場所에서 關係 資料, 物件, 施設에 대하여 實地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③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委員이나 職員으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陳情人, 參考人, 被陳情人의 陳述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委員이나 職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實地調査를 받는 機關, 團體 등이나 그 職員에 대하여 필요한 資料나 物件의 提出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資料나 物件을 領置할 수 있다.

⑤第2項 내지 第4項의 경우 當該 委員이나 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47條(調査의 限界와 事實照會) ①委員會가 第46條第1項第3號, 第2項 및 第4項의 규정에 의하여 關係資料나 物件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資料, 物件 또는 施設에 대한 實地調査를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中央國家機關의 長으로부터 당해 資料, 物件 또는 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確認書가 委員會에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資料나 物件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資料, 物件 또는 施設에 대한 實地調査를 할 수 없다.

1. 공개하면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 등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搜查·裁判·刑執行에 관한 資料나 物件으로서 공개하면 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進行중인 犯罪搜查 또는 繫屬중인 裁判에 重大한 地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事件關係人の 名譽나 私生活의 秘密 또는 生命·身體의 安全을 害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搜查方法상의 機密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나 物件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資料, 物件 또는 施設에 대한 實地調査를 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國家機關에 照會하여 필요한 事項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第48條(陳情의 移送) ①委員會는 陳情에 관하여 다른 國家機關에서 처리함이 相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陳情을 그 機關에 移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國家機關은 移送받은 陳情과 관련된 사건의 處理結果를 지체없이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第49條(調査의 中止) 委員會는 陳情의 當事者나 參考人の 所在不明 또는 疾病 기타 사유로 調査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事由가 解消될 때까지 調査를 中止할 수 있다.

第50條(緊急救濟措置 勸告) ①委員會는 陳情을 접수한 후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蓋然性이 있고, 이

를 放置할 경우 回復하기 어려운 被害發生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陳情에 대한 決定 이전에 陳情人이나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團體의 長 또는 監督機關의 長에게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1.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의 中止
2.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被陳情人의 당해 職務로부터의 排除
3. 기타 被害者의 人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救濟 措置

②第1項에 의한 勸告를 받은 被陳情人,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尊重하여야 한다.

第51條(合意勸告)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하는 과정에서 搜查機關등에 의한 人權侵害行爲 또는 差別行爲의 蓋然性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被害者 및 被陳情人에게 合意를 勸告할 수 있다.

第52條(調停節次の 開始) ①委員會는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當該 陳情을 調停에 回附할 수 있다.

②被害者와 被陳情人은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③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回附 또는 調停申請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調停節次를 開始하여야 한다.

④調停節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3條(調停) ①調停은 調停節次의 開始 이후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合意된 사항을 調停書에 기재한 후 被害者와 被陳情人이 記名捺印하고 委員會가 이를 確認함으로써 成立한다.

②委員會는 調停節次의 開始 이후 被害者와 被陳情人 사이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合意의 內容이 相當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職權으로 陳情에 관련된 모든 事情을 참작하여 陳情의 公平한 解決을 위한 決定(이하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의 中止
2. 同一 또는 類似的한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의 再發防止를 위한 措置
3. 原狀回復, 損害賠償 기타 필요한 救濟措置

④委員會는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을 한 때에는 被害者 및 被陳情人에게 지체없이 이를 送達하여야 한다.

⑤被害者 및 被陳情人은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이 送達된 날로 부터 2週日 以內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第54條(調停의 效力) ①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과 被害者 및 被陳情人이 第5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申請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은 裁判上의 和解와 동일한 效力이 있다.

②委員會는 被害者나 被陳情人이 第5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申請한 경우에는 被害者에게 다른 救濟手段에 관하여 助言할 수 있다.

第55條(法律救助) ①委員會는 第5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에 대한 異議申請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를 위한 法律救助를 결정할 수 있다.

②委員會가 第1項에 의한 法律救助를 결정한 경우 大韓法律救助公團기타 機關에 피해자를 위한 法律救助를 요청할 수 있다.

③大韓法律救助公團은 第2項에 의하여 法律救助를 요청받은 경우 피해자에게 法律救助를 하여야 한다.

④第1項에 의한 法律救助의 節次, 內容 및 方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6條(救濟措置 등의 勸告 및 意見表明) ①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내용이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에 해당하며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被陳情人, 그 所屬機關·團體의 長 또는 監督機關의 長에게 第53條第3項 各號의 사항을 포함하는 救濟措置를 勸告하거나 意見을 表明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陳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人權에 관한 法令·制度·政策·慣行의 改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 國家機關의 長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改善을 勸告하거나 意見을 表明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받은 被陳情人 또는 機關·施設·團體의 長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한 이를 尊重하여야 한다.

第57條 (陳情의 棄却) 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內容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陳情을 棄却한다.

1. 事實이 아닌 경우
2. 調査對象 人權侵害行爲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被害回復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別途의 救濟措置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第58條(告發 및 搜查依賴) ①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한 결과 陳情의 內容이 犯罪行爲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刑事處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檢察總長에게 告發할 수 있다. 다만, 被告發人이 軍人 또는 軍務員인 경우에는 各軍 參謀總長에게 告發하

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陳情을 調査하면서 犯罪嫌疑에 대한 상당한 蓋然性 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搜查機關의 長에게 搜查를 依頼할 수 있다

第59條(意見陳述機會의 附與) ①委員會는 第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濟措置의 勸告 및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告發을 하기 전에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意見を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이 正當한 사유없이 이에 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委員會에 出席하여 그 意見を 陳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第60條(決定의 通知) 委員會는 第43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送,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中止,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救濟措置 勸告, 第55條第3項에 의한 法律救助, 第56條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棄却, 第5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頼를 한 경우에는 이를 當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61條(調査등의 非公開) 委員會의 陳情에 대한 調査, 調停 및 審議는 非公開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이 있는 때에는 이를

公開할 수 있다.

第62條(勸告등의 公表) ①委員會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第5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 第5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과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結果등의 내용을 公表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5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發 및 搜查依賴를 할 경우에는 그 告發 또는 搜查依賴의 대상인 嫌疑事實을 제외하고 當事者, 罪名, 搜查機關名, 告發 또는 搜查依賴 日字만을 公表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등을 公表하는 경우 個人의 私生活의 秘密이 侵害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個人의 姓명을 匿名으로 하는 등 個人의 私生活의 秘密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第63條(措置結果등의 通報) ①委員會로부터 第19條, 第56條第1項, 第2項 및 第58條第1項,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告發, 搜查依賴를 받은 關係 國家機關·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 檢察總長, 各軍 參謀總長 또는 搜查機關의 長은 勸告,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받은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措置結果나 措置計劃을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로부터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받은 關係 國家機關·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은 그 勸告를 받은 때로부터 48時間 이내에 그 措置結果나 措置計劃을 委員會에 通報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로부터 第19條, 第50條第1項, 第5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받은 關係 國家機關·團體의 長이나 監督機關의 長이 그 措置結果 등을 通報함에 있어 委員會의 勸告를 受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正當한 理由를 說明하여야 한다.

第64條(法務部長官에 대한 經由 및 通報) ①委員會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 및 國會에 年例報告書 또는 特別報告書를 제출할 때에는 法務部長官을 經由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의 變更, 第19條 第2號, 第5號, 第7號 및 第9號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第5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第5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發 또는 搜查依賴를 한 경우와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結果 등을 通報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法務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65條(人權狀況分析報告書) 法務部長官은 每年 5月 31日까지 第19條, 第50條第1項, 第56條第1項, 第2項 및 第58條第1項, 第2項

의 規定에 의한 勸告, 告發 또는 搜查依賴와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結果나 措置計劃 등을 종합하여 人權狀況을 분석하고 그 改善對策을 大統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66條(準用規定) 委員會가 第4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第45條 乃至 第56條, 第58條 내지 第64條를 준용한다.

第67條(陳情調査·處理節次등) 이 法에 規定된 것 이외에 陳情調査 및 處理節次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章 國家의 支援 등

第68條(公務員등의 派遣)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法務部長官을 經由하여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教育機關 또는 研究團體에 대하여 公務員 또는 職員의 派遣을 要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와 협의하여 그 所屬 公務員 또는 職員을 委員會에 파견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파견된 公務員 또는 職員은 그 所屬機關 또는 團體로부터 獨立하여 委員會의 業務를 수행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公務員 또는 職員을 파견한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에 파견된 者에 대하여 人事·處遇 등에 있어서 불리한 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9條(出捐金の 交付) ①國家는 委員會의 設立, 施設, 運營 및 業務에 필요한 經費를 充當하기 위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에 出捐金を 交付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每年 出捐金豫算要求書를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出捐金豫算要求書를 調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예산당국에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の 要求, 交付, 使用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70條(財産의 寄附) ①法人·團體 및 個人은 委員會의 施設 및 運營에 관한 支援을 위하여 委員會에 金錢 기타 財産을 寄附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부받은 財産은 委員會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使用하여야 한다.

第5章 罰 則

第71條(罰則) ①虛僞의 事實을 委員會에 陳情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42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③第35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72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正當한 이유없이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視察을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2. 正當한 이유없이 第46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出席要求에 應하지 아니한 者
3. 正當한 이유없이 第46條第1項第4號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나 物件의 提出要求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資料나 物件을 提出한 者

4. 正當한 이유없이 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地調査를 拒
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②第36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委員會의 요청에 의
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法務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法務部長官에
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法務部長官은 지체
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
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設立準備) ① 大統領은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 以內에 法務
部長官의 추천으로 7人 以內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委員會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②設立委員은 定款을 作成하여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 ④設立委員은 委員會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委員會에 그 事務를 引繼한다.
-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 ⑥委員會가 設立될 때까지 委員會의 設立을 위하여 支出하는 經費는 委員會가 이를 부담한다.

第3條(人權委員의 任期에 관한 特例) ①第2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설립당시 委員(委員長은 제외한다)중 常任委員 1人和 非常任委員 3人の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가 2年인 委員에 대하여는 任命狀에 그 任期를 明示하여야 한다.

인권 자료실		
일련번호	유기호	사보번호
	C 3-2	64

법무부 수정안

I. 人權法 試案중 修正한 內容

削除한 부분

1. 이사회제도(시안 제23조 ~ 제25조)의 폐지

- 시안의 이사회는 관계부처 차관 4인과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의 선임이사로 구성
- 정부가 이사회를 통해 인권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다는 오해가 있음을 고려하고
 - 인권위의 운영상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폐지

2. 민법상 재단법인 준용규정(시안 제16조 제4항)의 삭제

- 인권위는 순수한 민간법인이 아닌 공공적 성격의 특수법인인 점 고려
 - 주무관청의 감독규정 적용배제를 위해 삭제

3. 정관변경에 대한 법무부장관 인가권(시안 제18조 제2항)의 폐지

- 법무부장관이 인가권을 가질 경우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한다는 의견 반영
 - 정관변경시 법무부에 사후 통보

4. 감사제도(시안 제26조)의 폐지

- 시안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도록 규정
- 인권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폐지

5. 인권단체 등록·국고지원 규정(시안 제62조 ~ 제64조, 제66조)의 삭제

- 인권단체를 국고지원할 경우 관변단체화되어 순수성을 해한다는 의견 반영

6. 기부금 수령시 법무부장관에 대한 신고조항(시안 제68조 제2항)의 삭제

- 법무부장관의 인권위 활동에 대한 관여 배제

7. 적용범위(시안 제8조)의 삭제

- 시안의 적용범위는 인권위의 조사기능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인권위는 교육·홍보 및 정책권고등 광범위한 기능이 있음을 고려

新設·追加한 부분

(1) 위원회의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 확대(시안 제9조)

- 수사기관등의 인권침해행위 유형 추가

-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추가
- 법관의 영장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예금계좌를 추적하는 등 불법으로 압수·수색하는 행위 추가
- 수사기관등 이외의 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 추가
 - 위원회 의결로 조사대상 공무원의 범위 확대가능

(2) 차별사유에 “정치적 견해” 추가(시안 제11조)

- 차별사유를 14가지에서 15가지로 확대
 - * UN인권 B규약, 공추위안 등 참고

(3) 인권위원회 업무 내용 추가(시안 제19조)

- ①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표명
- ② 국가기관이 요청하는 인권에 관한 연구와 자문
- ③ 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 ④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⑤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4) 임시구제조치 권고 신설

-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적절한 임시구제조치 권고 가능
 - * UN 권고안, 이기문 의원안 및 공추위안 참고
 - ※ 인권위의 임시구제조치를 명령권으로 할 경우 해당자의 제소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임시구제가 지연됨(제18~19페이지 참조)

(5) 인권위원 등의 대우규정 신설

-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은 차관급의 예우와 보수를 받도록 함

(6) 연례보고서 등의 제출기관으로 대통령 외에 국회 추가(시안 제21조)

- 연례보고서 외에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서도 제출 가능
 - * 이기문 의원안, 공추위안 및 외국 입법례 참고

□ 變更한 부분

1. 제2장의 명칭 변경

- 시안 :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 수정안 : 수사기관등의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 시안과 같이 할 경우 마치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은 오해를 줄 수 있음

2.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방법(시안 제27조)

- 시안 : 이사회(이사는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 제청, 대통령 임명
- 수정안
 - 제1안 : 법무부장관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단, 법조계·여성계·노동계·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자로 인권위원 임명토록 규정)
 - 제2안 :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이 각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씩 추천, 대통령이 임명(단,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 < 참고사항 >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등의 경우 인권위원을 법무부장관의 추천으로 총독이 임명하고,
 - 영국은 법무부장관이 인권위원을 임명하고 있음

3. 인권위원의 임기(시안 제27조제6항)

- 시안 : 2년, 1차 연임
- 수정안 : 3년, 1차 연임(단, 최초 인권위원중 절반의 임기는 2년)

4. 상임위원 및 소위원회 확대(시안 제31조)

- 시안 : 상임위원(위원장 포함) 3명
 - 소위 2개
- 수정안 : 상임위원(위원장 포함) 4명
 - 소위 3개

5. 필요적 이송사유를 각하사유로 변경(시안 제47조)

- 시안 : 인권위가 진정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 재판중인 경우 필요적 이송사유로 규정
- 수정안 : 수사, 재판 외에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 감사원의 감사, 다른 국가기관에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
 - 각하사유 소멸시 제 진정가능

6. 조사의 한계 축소(시안 제46조)

- 시안에 있는 자료제출거부사유중 "법령에 의한 공무상의 비밀", "사건관계인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등 삭제
 - 인권위 조사의 실효성 강화
 - * 공추위,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등 의견 반영

7. 출연금에 대한 예산심사권 배제(시안 제66조, 제69조)

- 위원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대한 법무부의 조정 불가, 예산청에 의견 제시만 가능
 - 인권위의 제정상의 독립성 보장, 사실상 예산회계법상의 독립기관화
- ※ 다만,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은 반대하고 있음

II. 修正된 人權法(案)의 主要 骨子

1. 總 則(안 제1조~제7조)

目的(안 제1조)

- 모든 사람에게 人間の 尊嚴性을 보장하기 위하여 人權侵害를 防止·救濟하고 人權을 伸張함을 목적으로 함

基本方針(안 제2조)

- 人權意識 고취를 위한 教育 및 弘報, 人權의 保護와 伸張을 위한 制度改善, 人權侵害行爲의 調査와 救濟등의 실천
- 이에 대하여 國家가 제1차 責任을, 國民人權委員會가 이를 監視·補完하는 責任을 부담

國家機關의 役割(안 제5조~제6조)

- 법 무 부 : 인권옹호종합계획 수립과 홍보, 각 부처간 협력, 국민인권위원회 지원
- 외교통상부 :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활동의 참가,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의 예방과 구제를 통한 인권신장에 노력
- 교 육 부 :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노력, 다수인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행위 예방
- 노 동 부 : 근로자의 인권신장에 노력,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행위 예방
- 여성특위 : 여성에 대한 차별을 예방·시정·개선

2.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안 제8조~제13조)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안 제8조~제9조)

- 檢察, 警察, 安企部, 矯正機關, 保護觀察所, 出入國管理事務所 소속 공무원 및 기타 特別司法 警察官吏, 軍檢索·憲兵·機務部隊 소속 軍人, 軍務員과 그 사주를 받은 자 또는 정신 병원등 多數人保護施設 소속 직원이 不法으로 행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①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는 행위
- ② 사람에 대하여 暴行, 脅迫, 拷問등 苛酷한 행위를 하거나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 ③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權利行使를 방해하는 행위
- ④ 우편물의 檢閱, 전기통신의 監聽 또는 타인간의 對話秘密을 침해하는 행위
- ⑤ 타인의 私生活에 관하여 正當한 이유없이 이를 暴露하거나 寫眞을 撮影하여 公開하는 행위
- ⑥ 사람을 侮辱하거나 性的 羞恥心을 유발하는 행위
- ⑦ 警察留置場, 矯正機關, 多數人保護施設등의 수용자나 피보호자를 法令上 根據 없이 懲罰하는 행위
- ⑧ 타인의 預金計座를 추적하는등 押收·搜索하는 행위

□ 差別行爲(안 제10조~제13조) -

- 差別行爲의 內容 : 人權侵害行爲 중 性別 人種 宗教 心身の 障礙 出身地域 등을 이유로 雇傭 財貨·서비스의 제공, 公衆施設 등의 이용 기타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合理的인 根據없이 특정한 사람들을 우대하거나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 憲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平等權을 침해하는 행위를 差別行爲로 함(안 제10조)
- 「人種侮辱」과 「性戲弄」를 差別行爲의 특수한 유형으로 규정(안 제11, 12조)
 -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 外國의 입법례도 人種侮辱또는 人種的 괴롭힘, 性戲弄을 특수한 유형의 差別行爲로 봄

3. 國民人權委員會(안 제14조~제66조)

□ 設立形態 및 地位(안 제14조, 제15조)

- 人權保障의 實踐機構로서 「國民人權委員會」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特殊法人으로 설립
- 國家의 人權保障機能의 허점을 監視·補充하는 역할 수행
- 政府로부터의 獨立性을 制度的으로 보장

< 참고사항 >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립하기 어려운 이유

(i)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국가기구로 하여 시정명령권등을 부여할 경우 장관급 1인, 차관급 9인등 고위직과 500명 이상의 공무원 증원이 필요함

※ 공정거래위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기능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와 4개 지방사무소에 414명의 직원이 있음(인권위는 그 업무범위와 조사대상이 공정거래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함)

-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총정원령”(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공무원 정원은 동결되고 매 3년마다 감축하여야 하는데,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할 경우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움.

(ii) 국가기구로 하면 인권침해 조사와 인권관련 제도개선에 관하여는 「여성특위」, 「국민고충처리위」 및 노동부 산하 「고용평등위」, 「노동위원회」 등과, 인권교육·홍보에 관하여는 「교육부」 등과의 기능 중복으로 인하여 국가기관간의 기능혼선과 갈등야기

- 독립적 특수법인으로 해야 포괄적인 민간 감시 가능

(iii) 국가기구인 인권위는 대통령 산하기구가 되고 관료화되어 자유로운 입장에서 정부를 감시, 비판하기 곤란함

(iv) UN의 「국내인권기구 설립권고안」도 인권위에 “정부로부터 분리·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며, UN으로부터 모범적인 인권위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南阿共 등의 인권위도 정부로부터 분리·독립된 특수법인체임

□ 業務(안 제19조)

1. 인권 교육 및 홍보
2.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수사기관등의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필요한 경우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시찰과 권고 또는 의견표명
5.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표명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등에 관한 지침 제시 및 권고
7. 인권단체와의 협력
8.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 組織

○ 인권위원(안 제24조 ~ 제28조)

-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인권위원으로 구성, 그중 상임인 위원장외 3인은 상임
 - ※ 현재 「국민고충처리위」는 10명의 위원중 3명이 상임
-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창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大統領이 임명
 - 사회적 신망이 높고 人權에 관한 識見과 經驗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
 - 법조계, 여성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자로 임명
 - 3인은 변호사 자격자로, 2인 이상은 여성으로 선임
 - ※ 필리핀과 인도는 인권위원의 과반수 이상, 호주는 1명 이상의 인권위원을 변호사 자격자로 선임
- 임명권자 : 大統領
- 임기 : 3년, 1차 연임 가능
- 대우 및 예우 : 위원장은 장관급, 상임위원은 차관급

◦ 小委員會(안 제25조)

- 전체위원회 관장사항중 일부를 상임위원 1인이 포함된 3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 小委員會에서 처리(3개 소위 구성)

◦ 事務處(안 제33조)

- 사무총장 및 직원으로 구성,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
-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地方事務所(안 제16조)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음

□ 搜查機關등의 人權侵害行爲 및 差別行爲등의 調査와 救濟(안 제39조~제66조)

◦ 調査對象(안 제39조)

① 수사기관등의 人權侵害行爲

- ② 수사기관등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그 사주를 받은 자가 행한 제①항의 행위로서 인권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하기로 의결한 행위

③ 인권침해행위 중 차별행위 일반

◦ 調査開始事由 : 陳情 또는 職權(안 제40조, 제43조)

- 직권조사는 중대한 人權侵害行爲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에 가능(안 제43조 제2항)

※ UN 권고안 및 外國의 人權委들도 직권조사권 인정

◦ 調査의 目的(안 제44조)

- 조사의 목적은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
- 따라서

① 國家機關의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

② 계속중인 裁判, 搜查중인 사건의 소추에 대한 부당한 관여 목적의 조사등이 금지됨

◦ 調査方法(안 제45조, 제46조)

- 진정한 기타 관계인에 대한 陳述書提出要求權, 出席要求權, 鑑定依頼權, 관계자료등의 提出要求權 인정

- 關係資料등의 提出權은

- 국가안전보장·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수사·재판·형집행 관련 자료로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제외

· 이 경우 해당 기관에 事實照會하여 필요한 사항의 확인 요구

- 필요한 경우 現場調査 가능

※ UN 권고안 및 外國의 人權委들도 現場조사(on-site investigation) 인정

< 참고사항 >

-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권위에 강제수사권을 주자는 주장이 있으나 현행 헌법상 압수·수색영장 신청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헌법 제12조 제3항)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 인권위 소속 검사를 두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게 하자는 의견(공추위안)이 있으나 이 경우 인권위가 새로운 수사기관이 되어 권력기관화 하므로 인권위의 인권침해를 감시할 제2의 인권위가 필요하게 되는 등 채택하기 어려움

○ 調査 등의 非公開(안 제60조)

- 진정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가 원칙
-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외

○ 處理

① 臨時救濟措置 勸告(안 제49조) - 신설

- 인권침해가 계속중이라는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라도 인권침해 중지, 피진정인의 당해 직무로부터의 배제 등의 임시구제조치 권고
- 임시구제조치 권고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권고에 응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의무 부담

< 참고사항 1 >

- 인권위의 권한으로 임시구제조치를 규정한 外國 입법례는 거의 없으며
- 뉴질랜드의 경우 인권위 전담 특별법원인 진정심판소(Complaints Review Tribunal)에서 가처분명령(interim order)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서 다시 결정하게 됨

< 참고사항 2 >

- 인권위에 권고권을 줄 경우에는 1회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나, 구속력있는 명령권을 줄 경우에는 제소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피해구제가 장기화 되므로 간이·신속한 구제라는 인권위 본래의 구제방식에 맞지 않음
- 일부에서는 권고를 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그만이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나, 인권위는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고, 인권침해문제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므로 국가기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음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外國의 인권위도 권고권만을 갖고 있으며 구속력 있는 명령권(시정명령권)을 갖고 있는 外國 인권위는 거의 없음

② 調停(안 제51조~제53조)

- 조정 성립시 법원의 판결과 같은 裁判上 和解의 효력이 부여됨

< 참고사항 >

- UN 권고안도 조정 또는 구속력있는 결정을 통하여 진정당사자 간의 「화해」를 도모하도록 권고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外國의 人權委도 調停(Conciliation)을 통한 간이·신속한 救濟를 도모

③ 法律救助(안 제54조) - 신설

- 조정 불성립시 법률구조공단 기타 기관에 구조요청 가능

④ 救濟措置 勸告 또는 意見表明(안 제55조 제1항)

- 구제조치 권고의 내용에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또는 동종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조치등 포함

⑤ 告發 및 搜查依頼(안 제57조)

- 인권침해자의 처벌이 필요하거나 사건의 본격적 수사가 필요한 경우

⑥ 관계 法令·制度등의 改善勸告 또는 意見表明(안 제55조 제2항)

⑦ 관계기관에의 移送 (안 제47조)

-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관계기관에 이송

⑧ 진정의 却下(안 제42조)

- 却下 대상 : 진정의 원인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經過한 경우, 匿名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취지가 당해 진정 원인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反하는 경우, 수사·재판·국회의 국정조사·법률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등(外國의 입법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동일)
- 다만, 1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전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사가 가능 (과거사 청산기능 수행 가능)

⑨ 진정의 棄却(안 제56조)

- 棄却 대상 :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등

○ 처리내용의 公表(안 제61조)

다만,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匿名으로 公表

○ 措置結果 通報(안 제62조, 제63조제2항)

- 고발,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그에 대한 措置結果를 위원회에 通報하여야 함
-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의 권고를 受容하지 않을 경우 그 理由를 說明하여야 함
-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에게 권고, 의견표명, 고발등을 한 경우 및 국가기관 등이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위원회는 법무부에 그 내용을 사후
통보

< 참고사항 >

- 外國의 경우도 人權委의 권고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호주, 뉴질랜드, 캐
나다 등)

□ 拘禁·保護施設에 대한 視察(안 제20조)

- 인권실태 파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유치장, 교정기관, 외국인보호소, 군
교도소 및 다수인보호시설등 拘禁·保護施設에 대한 인권위원의 視察 가능(위원
회의 의결 필요)
- 시찰시 수용자나 피보호자 面談 가능
- 改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勸告 또는 意見表明

< 참고사항 >

-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拘禁·保護施設에 대한 視察權을 부여함으로써 재소자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필리핀, 인도, 스웨덴등 外國의 경우에도 人權委 또는 ombudsman에게 이와 유사한 시찰
권 부여

□ 委員會 活動의 實效性 확보수단

- 刑事處罰(안 제70조)
 - 경찰서유치장, 교도소등 구금·보호시설에서 위원회에 제출할 陳情書 作成을 不許하거
나,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지 않은 자(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過怠料 부과(안 제71조)
 - 아래의 경우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不應한 자
 - 위원회의 자료·물건제출 요구에 不應하거나 虛偽의 자료·물건을 제출한 자
 - 위원회의 現場調査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視察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國家機關등의 協力義務
 - 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성실협조의무,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존중의무(안 제21조, 제22조)
 - 위원회에 公務員 派遣 가능(안 제67조)
- 國民 輿論
 -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국가기관이 거부할 경우 여론의 압력으로 사실상의 강제효
과

□ 委員會의 豫算(안 제68)

- 위원회의 예산은 정부 出捐金과 민간기부금으로 충당

※ 영국의 인권위도 민간기부금 수령

○ 위원회의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법무부의 조정 불가, 예산청에 의견제시만 가능

< 참고사항 >

· 영국, 호주 인권위는 법무부 예산에 포함되어 예산청에 요구

□ 委員會의 年例報告書(안 제23조)

○ 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필요한 경우 특별보고서 작성) 大統領 및 국회에 제출하고 國民에게 공표

□ 法務部の 人權狀況 分析報告書(안 제64조)

○ 매년 5월중 위원회가 정부의 인권상황개선 노력과 위원회가 지난 1년간 행한 실적등을 종합, 인권상황을 분석하여 그 개선대책을 大統領에게 보고

□ 罰 則(안 제70조)

○ 虛偽事實 陳情, 인권위원등의 資格詐稱의 경우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인권위원 및 직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金品收受(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職權濫用(형법 123조), 秘密漏泄(형법 127조)의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

○ 인권위원 및 직원이 政治運動에 관여한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위반으로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참고사항 >

· 인권위원회가 국가기구로 설립된 外國의 경우에는 당연히 각 해당 법조 적용하여 형사처벌

· 뉴질랜드의 경우 인권위원등이 민간인 신분이나 처벌법규 적용시 공무원으로 간주